

서울특별시의회
제33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
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9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☐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☐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

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현재 우리나라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

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

집중되었으며,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

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☐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

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으며,

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

예술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☐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

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
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,
예술인의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·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
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
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
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.

-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경우,
상위법인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
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,

예술인의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·정치적 지위 보장 및
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
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
목적으로 하는 조항 및 관련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
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
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
신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책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4조의 경우,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
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는 지원사업으로서
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,
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,
예술인에 대한 성희롱, 성폭력 예방 교육 및
피해 구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의 경우,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에 대한
조향을 신설하였으며,
안 제7조는 상위법 제12조에 따라,
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조향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
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
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
재정지원 조향을 신설하였으며,
안 제9조의 경우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